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이의신청 결과 서면 통지 및 쟁송수단 등 안내 규정 신설>

■ 광상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359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은 호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3

I. 개요

1. 광상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35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광상언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6. 19.
- (3) 회 부 일 : 2026. 7. 23.

나. 제안이유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이의신청의 방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음.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제37조는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의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그러나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36조제4항 및 제37조에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청구·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청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고 있지 아니하며,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여야 할 의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만으로는 결과 통지 의무 및 쟁송수단 안내 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및 급여 신청인 등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36조제5항·제6항 신설).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수급자격 인정, 활동지원등급, 활동지원급여 등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5항·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이의신청) ① ~ ④ (생략) <u><신설></u>	제36조(이의신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및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u> ⑥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제37조에 따른 행정소송 등 이용할 수 있는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u>
<u><신설></u>	

현행	개정안
	기 전에 이미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검토의견

- 활동지원급여 관련 처분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유지와 돌봄 지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이 이의신청 결과와 후속 권리구제 절차를 명확히 안내받을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은 이의신청 결과의 서면 통지와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재송수단 및 제기기간 안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¹⁾

신청인이 이의신청 결과를 확인한 뒤 후속 절차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청의 통지·안내 절차를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본법」 제 36조에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

1) 참고로, 광상언의원은 동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총 12건의 법률안([22190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06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0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363]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36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371]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372]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37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37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38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386]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21938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음.

을 함께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에 이의신청 결과 통지와 재송수단·제기기간 안내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의신청 결과 통지 및 재송수단 안내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가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 「행정기본법」 제36조는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방식을 서면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개정안의 서면 통지 규정이 통지 방식을 구체화하는 의미는 있으나, 장애유형에 따라 서면만으로는 이의신청 결과와 후속 권리구제 절차가 충분히 전달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음.²⁾

즉, 개정안은 이의신청 결과의 서면 통지와 재송수단 안내에 관한 사항을 개별법에 명확히 규정한다는 의미가 있으나, 「행정기본법」상 이미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다시 규정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개별법에 별도 규정을 둘 실익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³⁾

2) 「장애인복지법」의 경우도 이의신청 결과 통보를 서면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음.

「장애인복지법」 제84조(이의신청) ①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은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복지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3) 또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현재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의 처분(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으로 한다)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제2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이미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이의신청)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청 서류의 사본을 이해관계인에게 보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개정안은 이의신청 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함께 안내하도록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각 개별법에도 동일하게 신설하도록 하는 것으로,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서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명시함에 따라 개별 법령에 대해 단순 반복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음.

나. 법제처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및 신청인 등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개정 규정과 같은 조항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행정기본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행정기본법」이 개정될 경우 개별법과 내용상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어 매번 추가로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

가 있음.

- 관련하여,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행정기본법」 제36조를 따르도록 하는 연결 규정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이의신청의 특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해상교통안전법」 제52조(인증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공인회계사법」 제52조의3(이의신청 특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 ⑦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부과금 또는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문 의 처

02)6788-5502